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23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김 건·이헌승·서일준

김정재 • 박충권 • 안철수

인요한 · 김희정 · 유용원

주진우 · 강선영 · 장동혁

이달희 • 윤재옥 • 최수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법률 제 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참여하여야 한다"를 "참여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 ①		
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			
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			
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			
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			
에 참여하여야 한다. <후단 신	참여하여야 하고, 재외공관		
<u>설></u>	의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보고받은 결과를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